

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주요 변경사항

□ 주요 변경사항

- **(선정평가 대상 범위 확대)** 기존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 사업계획 1.5배수 범위 → 변경 2.0배수 범위로 조정
- **(사업비 비목 변경)** 기존 인건비·유형자산·건설비·운영비 → 변경 유형 자산·건설비·운영비
※ '24년도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현물(인건비)의 경우 '25년도에는 사업비 불인정 (세부사항 관련 「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관리지침」 숙지 필요)
- **(사업관리)** 사후관리 정의 명확화 및 보조사업의 선제적 관리강화를 위해 매년 제출하는 사업효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(3년 → 5년)
※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(기획재정부 고시) 제46조(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) 제③항4호. 그 밖의 기계,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
- **(사업수행)** 지원과제 수행 시 발생하는 인·허가를 선제적으로 해결 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사업의 지체를 방지
- **(자격기준)** 기존 신청자격 기준 시점을 명확하게 변경하여 참여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통일
- **(기타)** 관리지침 제2조(정의), 제5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, 제27조 (이의신청) 기준 정리 및 전반적인 용어 수정